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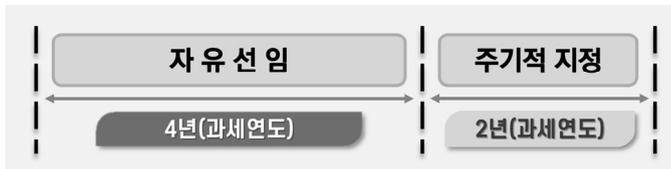
- 국세청, 2024. 4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1-1 제도 개요(상증법 §50④)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국세청장에 위임)

* ('19년 상증세법 개정)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



*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과세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계산(상증세법부칙제16846호§7②, '19.12.31.)

1-2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2)

- (지정회계감사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 지정기준일 : 지정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째 되는 날



☞ 예시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가 2024. 1. 1. ~ 2024. 12. 31인 경우

- 2022.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지정기준일은 2023년 11월 15일임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제외

- ① 지정기준일로부터 4 년 이내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기준위반 이 발견 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정연기(상증칙 §14의2)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 연기

- ① 지정기준일 현재,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 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감사인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상증칙 시행(3. 18.) 전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까지 연기 가능[해당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2 감사인 지정 방식

2-1 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기준)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지정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감사인 지정
- (분산지정)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도 안분 하여 지정 가능
 - ☞ (예시) '24년도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이 총 30개인 경우, 6개 과세연도로 안분하여 지

정대상 첫번째 과세연도에는 5개 공익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순서대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 ☞ 감사인 지정점수 :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력점수, 교육이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상증칙에 따라 산정

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 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 n)
 * n : 지정 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0.1. 부터 다음 해 9.30. 까지 지정 예정 된 공익법인 수

- (2년차 지정) 지정대상 두번째 과세연도에 대하여 첫번째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을 다시 지정
- (지정배제) 지정대상 첫 번째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은 배제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 높은 감사인을 지정

각 회계법인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점수 순으로 배열

I법인 220,000점, 법인 90,000점, 법인 50,000점

1순위 : I법인 (220,000점)
 2순위 : II법인 (90,000 점)
 3순위 : I법인 (55,000점 =220,000/4)
 4순위 : 법인 (50,000점)
 5순위 : II법인 (22,500점 =90,000/4)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자산 규모 ↓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	회계법인	지정점수	지정점수 ↓
	A공익	2조원	↔	I법인	220,000점	
	B공익	1조원	↔	II법인	90,000점	
	C공익	9천억원	↔	I법인	55,000점	
	D공익	5천억원	↔	III법인	50,000점	
	E공익	3천억원	↔	II법인	22,500점	



3 감사인 지정 절차

3-1 지정절차 및 일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
(2024 과세연도 12월 결산법인 기준)

'23.9.1.~9.14.	~ '23.10.18.	~ '23.11.1.	~ '23.11.15.	~ '23.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서 (감사인 제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지정 예정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 통지 의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감사인 확정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 공익법인·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 공익법인·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는 매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진행

3-2 지정기초자료 제출

○ 기초자료 :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

* 총자산가액 최근 4년 감사인 선임방법, '22 과세연도 감사인 등 기재

※ 홈택스 www.hometax.go.kr 제출 방법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제출(공익법인)

● 기초자료 제출시 다음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

○ 기타자료

- ①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 ②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자

○ 자료제출 면제 : 공익법인은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중 두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총 4개 과세연도)

☞ (예시) 2023 과세연도와 2024 과세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2024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총 4개 과세연도에는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3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 예정통지 :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
 - * 지정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 개월 15 일이 되는 날(2024과세연도 감사인 지정 : 2023년 11월 15일)
 - 의견제출 :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음
- 의견제출 사유
 - ① 지정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과 감사인 간 이견이 큰 경우
 - ③ 공인회계사법 직업윤리 위반 우려 등 감사인이 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4 확정통지 및 재지정 요청

- 확정통지 : 국세청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과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
 - 감사계약체결
 - 공익법인과 지정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정감사인 계약체결일로부터 2 주 이내 계약서사본을 국세청에 제출
 - 공익법인은 재지정 요청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지정 요청 사유
 - ①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② 지정 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4 지정 감사인 신청방법

4-1 지정감사인 신청

- 감사인 신청 :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감사인 신청서를 제출
 - *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 이수 실적 ,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을 기재
 - 신청요건
 - ① 과거 2년 이내*에 소속 공인회계사 중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 교육 이수 실적
 - *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2년 이내
 - ②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 *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 ①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
- ※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방법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감사인)

4-2 감사인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확정, 재지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③ 회계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 ④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4-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3n)
 *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①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가) + (나) 매년 9 월 1 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가) 각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를 합산

(나) 과거 2년 이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수×110점

② 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공익법인 수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지정 예정된 공익법인 수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

두 개 이상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

○ 적용기준

① 각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 합계

②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감사인

③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5 주요 Q&A

Q1. 감사인 지정대상 (4개 과세연도 자유선임) 판단방법

감사인 지정을 받는데, 자유선임 4개 과세연도는 어떻게 적용 하는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개 과세연도는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산정 합니다.

(예시) '19~'22 과세연도에 자유선임한 경우 '23~'24 과세연도는 지정대상임

Q2.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23년 선정 여부)

총자산가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23 년에 모두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서대로 안분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Q3.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 자유선임 계약 시 감사인 지정 여부

지정대상 과세연도 (2024 과세연도 를 포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인 지정 연기가 가능한



지?

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에 한해서는 지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상증칙 시행일(3.18.)전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연기 가능[해당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Q4.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 시 자유선임 계약

분산지정으로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이 2년 계약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동 기간 중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자유선임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공익법인의 지정 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에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의 '24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 기초자료 제출기간은 9.1.~ 9.14.이며 상 증칙[별지 35호 서식*]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별지 35호 서식)

① 홈택스 (www.hometax.go.kr) 제출 방법

: 홈택스(공공인증서 등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

② 우편 제출 방법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담당]

Q6. 감사인 지정 배제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지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되므로 지정 기초자료 작성시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였거나 선임 예정인 감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7. 감사인 지정방법

감사인으로 지정되는 회계법인 등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감사인별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부터 총자산가액이 큰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Q8. 지정감사인과의 보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 받은 감사인과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지정대상 공익법인과 지정하려는 감사인은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9. 회계법인 지점의 지정감사인 신청 가능 여부

회계법인은 지점에서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 감사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지점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감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감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